

신탁회사가 수탁받은 토지를 택지·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개발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의 개발사업별로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.

다. 내부통제기준 마련(법 제24조의4 신설)

신탁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의 임·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도록 함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1월17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  
재정경제부 이 헌 재  
장 관

◎法律 第7338號

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

금융지주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6274호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제1항중 “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”를 “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처분하여 5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”를 “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지배하는 주주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처분기한 만료일 이전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법정시한(2005. 3. 27) 내에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,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그 보유주식의 처분기한을 최장 4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하여 지배주주가 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보유주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5년 1월 17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
국무위원  
재정경제부 장관 이 헌 재

◎法律 第7339號

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

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 제목중 “제한등”을 “제한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, 동조제2항중 “그 特別關係者”를 “그 특별관계

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”로, “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는 날부터”를 “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”로 한다.

제23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제4항(중전의 제3항)중 “第11條第1項·第2項·第5項, 第22條 및 第23條第1項”을 “제11조제1항·제2항 및 제22조”로 하며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 정정신고를 한 경우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
2.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

제24조제1항중 “公開買受者”를 “공개매수자(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24조의2제1항 본문중 “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買受를 할 수 있게 된 날”을 “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